

다.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73조 제3항제8호의2	50	100	100
---	--------------------	----	-----	-----

부 칙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09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20년 11월 24일

국무총리 정 세 균

국무위원

환경부장관

조 명 래

●대통령령 제3118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가.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 나.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고시
 - 다.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
 - 라. 법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 마.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별표 8 제2호아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8조제1항 제1호의2	300	500	1,000
--	-----------------------	-----	-----	-------

별표 8 제2호카목(중전의 차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호의3”을 “제1호의4”로 하며, 같은 호 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호의4”를 “제1호의5”로 한다.

별표 8 제2호로목부터 구목까지를 각각 모목부터 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 법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제1항 제3호의4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500	700	1,000
2) 의뢰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한 경우		500	700	1,000
3)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한 경우		500	700	1,000
4)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별표 8 제2호소목(중전의 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제3항 제6호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	70	100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가 그 해당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100	100	100

부 칙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전문적·기술적인 검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지정서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의 위반유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권한 등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과 관련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20년 11월 24일

국무총리 정 세 균

국무위원

환경부장관

조 명 래

●**대통령령 제31184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별표 1”을 “별표 1에 따른 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동차의 부품으로 사용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로 한다.

1. 자동차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전기·전자제품
2.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전자제품
3. 대형 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설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전자제품
4. 「의료기기법」 제6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전기·전자제품

제9조제1항 중 “별표 1의2를”을 “별표 1의2에 따른 함유기준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2와 같다”를 “별표 2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별표 3”을 “별표 3에 따른 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자동차의 부품으로 사용되는”을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5조의4 본문 중 “별표 3”을 “별표 3에 따른 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자동차의 부품으로 사용되는”을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26조 중 “별표 7과 같다”를 “별표 7에서 정하는 재활용방법과 기준을 말한다”로 한다.